

■ [별표 1]

순환자원 지정대상(제2조제1항 관련)

1. 폐지류
2. 고철
3. 폐금속캔류
4.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
5. 비철금속 중 구리
6.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
7.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
8. 폐식용유
9. 커피찌꺼기
10. 왕겨 및 쌀겨
11. 폐석재
12. 폐합성수지 중 아이씨트레이(IC-Tray)